# 법무법인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칙

제 정 2011. 2. 28 개 정(1) 2014. 3. 10 개 정(2) 2016. 7. 26 개 정(3) 2019. 9. 3

개 정(4) 2020. 9.29 개 정(5) 2022. 2.16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)가 외부 법무법인(법률사무소 포함)을 선정, 관리 및 고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- 제2조(법무법인 Pool 선정 및 관리) ① 법무담당부서는 법무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 목록(이하 "법무법인 Pool")을 선정·관리한다.
  - ② 법무담당부서는 최소 3년 단위로 법무법인 Pool을 평가하여 재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③ 법무담당부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 법무담당 부문장의 승인을 얻은 후, 제2항에 따른 법무법인 Pool 재조정 절차를 진행한다. 다만, Pool 재조정 시 법무법인을 추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법무법인 Pool 적정 규모
  - 2. 제외 또는 추가 선정 기준
- 제3조(법무법인 Pool 선정절차) ① 법무담당부서는 외부 또는 내부 Database를 활용하여 기초 법무법인 목록(이하 "Longlist")을 선정하고, Longlist 중에서 각법무법인의 전문성, 실적,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담당 부문장의 승인 하에 제안요청서 발송대상 법무법인 목록(이하 "Shortlist")을 선정한다.
  - ② 법무담당 부문장은 위 Shortlist 중 최종 법무법인 Pool에 포함될 법무법인을

선정하기 위하여 법무담당부서장, 법무담당부서 소속 사내변호사 1명, 전통자산 운용담당 차장 이상 직원 1명, 대체자산운용담당 차장 이상 직원 2명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)를 구성한다.

- ③ 심의위원회는 Shortlist 법무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 등을 기초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선별적으로 고려하여 Shortlist 법무법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.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 Shortlist 법무법인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. 인지도 및 평판
- 2. 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
- 3. 업무경험, 실적 및 지속성
- 4. 비용의 적정성
- 5. 지역별 · 분야별 전문성
- 6. 고객서비스의 근접성 및 차별성
- ④ 법무담당부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장의 승인 하에 최종 법무법인 Pool을 결정한다.
- 제4조(기본계약) ① 제3조에 따라 신규 법무법인을 선정한 경우, 구체적인 계약조 건을 협상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한다.
  - ② 기본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.
  - 1. 서비스 대상 및 범위
  - 2.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  - 3. 이해관계의 상충에 관한 사항
  - 4.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- 제5조(고용절차) ① 법무담당부서는 기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Pool 내에서 개별 자문건의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고용절차를 진행한다.
  - ② 법무담당부서는 예상비용에 따라 아래 각호의 방식으로 제안서를 수취한 후 관련 법무법인(Working Group)의 구성원, 대상 서비스에 대한 숙련도, 유사 업무 경험, 서비스의 범위 및 예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법인을 고용하다.
  - 1. 예상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수취
  - 2. 예상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수취

-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, 해당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만 제안서를 수취하여 고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안서 제출 기회가 Pool 내 특정 법무법인에게 집중되지 않 도록 유의한다.
- 제6조(특정분야 수시고용 등) ① 사안의 시급성, 관할지역(Jurisdiction)의 특수성, 제한적인 접근성(Accessibility), 특정분야 전문성, 타 기관과의 공동선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 Pool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 법무법인을 수시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, 법무담당부서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장의 승인 하에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고용할 수 있다.
  - ② 전항의 사유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수시고용할 필요가 있는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Pool에 포함된 경우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장의 승인 하에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고용할 수 있다.
- 제7조(모니터링 및 계약해지) ① 법무담당부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고용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종료 시 평가표(별지)를 작성하여 법률자문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, 이를 제2조에 따른 법무법인 Pool 재조정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자문 요청부서가 법률자문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률자문 평가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법무담당부서는 Pool 내 법무법인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사항 발견 시 사장의 승인 하에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8조(법무담당부서 외 고용) 법무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담당부서(이하 "비법무담 당부서")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무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법무법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.
  - 1. 해외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지 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
  - 2. 의뢰할 자문의 성격 및 내용이 특수하여 비법무담당부서가 직접 고용하기에 적절한 경우
  - 3. 그밖에 법무담당부서와 비법무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시행일 전일 현재 자문사 Pool은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무법인 Pool 재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2조 제2항이 정한 3년의 기간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 (별지)

##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

자문	건:
자문	기관:

□ 평가내용

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점수
1. 자문의 정확성	<ul><li>○ 요청 사항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</li><li>○ 관련 법령 또는 시장표준에 부합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</li></ul>	/25
2. 자문의 유용성	○ 자문 결과가 공사의 투자계약체결 또는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	/25
3. 자문의 적시성	ㅇ 적시에 성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	/25
4. 비용 적정성	○ 업무량·업무난이도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 청구되었는지 여부	/25
합계		/100
기타 의견:		

※ 등급별 평가: 매우 만족(25점), 만족(23점), 보통(21점), 부족(19점), 부적격(17)